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3. 소병훈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9. 4.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2025.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3.11.)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3.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소병훈의원)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

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 및 수정한 경우 외에 기재 및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실제로 의료진의 환자 진료정보 무단열람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또한, 현행 보건복지부고시인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전자의무기록 관리자가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이력관리를 위한 로그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전자의무기록 ‘열람’까지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

기 위한 데이터 관리와 저장 비용이 증가하고, 의료인 입장에서 모든 접근 행위를 감시 대상으로 느껴 의료행위의 위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의료기관이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의료인 등이 전자의무기록에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을 한 경우 외에도 처음 기재하거나 이를 열람한 경우까지 접속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